

# 서울특별시 광역심리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80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년 4월 18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「서울특별시 광역심리센터」는 서울시민에게 양질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울시 심리지원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
- 나. 마음투자지원사업의 민간심리상담기관(바우처) 평가 및 모니터링, 서비스 질관리를 위한 제공인력에 대한 역량강화,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제공, 상담인력 확보를 위해 주요기관(심리학회, 주요대학 등)과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을 수행하기위해
- 나. 심리지원 분야의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서, 신규위탁을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 (의회동의 및 보고) 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 광역심리센터 운영
- 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- 추진근거
    - 「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(센터운영의 위탁)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사무의 기준)①항3호 (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)

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중증정신질환 중심의 정신건강사업이 시민의 일상적 마음돌봄을 위한 체계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서울시 심리지원사업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며 서울시광역심리센터가 그 역할을 수행해야함
- 심리지원사업의 평가, 관리, 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 지식과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임

다. 위탁사무 내용

- 마음건강검진 및 심리평가
- 개인별·집단별 맞춤형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 제공
- 재난심리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
- 대상자 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서비스
- 심리지원 서비스 모델 개발·보급
- 서울심리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및 운영 지원
- 서울시 심리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기술 지원
- 서울시 심리지원사업 관련 정책 연구 및 개발 기획
- 서울시 심리지원사업 관련 전문인력 직무역량 강화 교육 지원
- 서울시 심리지원사업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

라. 민간위탁기간 : 2024. 7. 1.~2026. 12. 31.(2년 6개월 )

마. 위탁시설 개요

- 시 설 명 : 서울특별시 광역심리센터
- 소 재 지 :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49
- 시설규모 : 면적 1,232㎡(373평, 지하1층~지상5층)

바.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 (신규위탁)

사. 소요예산 : 1,151,183천원

- 민간위탁금 : 557,695천원(인건비 265,331천원, 운영비 109,754천원, 사업비 등 182,610천원)

- 민간위탁사업비 : 593,488천원(시설공사비 등 593,488천원)

아.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- 정신건강 및 심리 관련 분야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·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

**제7조(센터운영의 위탁)** ① 시장은 심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리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.

1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 되어 있는 학교
3.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

② 시장은 심리지원센터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탁에 필요한 절차·방법 등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
**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**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○ 민간위탁 사전이행 절차

- 2024.4.15. : 서울시광역심리센터 설립·운영 계획 수립

- 2024.4.15. : 민간위탁추진 계획 수립(신규위탁)

- 2024.4.16. :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완료(적정, 2024년 제3차)

○ 향후계획

- 2024.4. : 시의회 동의

- 2024.7. : 민간위탁 신규위탁 추진

※ 작성자 : 정신건강과 정신건강정책팀 전영희 (☎ 2133-7558)